아르뮤제자이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 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336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안산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11.12.(목)	'26.11.23.(월)	'26.11.24.(화)	'26.11.25.(수)	'26.12.01.(화)	'26.12.05.(토)~ '26.12.08.(화) (주말 포함, 4일간)	'26.12.13.(일)~ '26.12.15.(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xi.co.kr/armusee**)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2.(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안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11.23.(월)	'26.11.24.(화)	'26.11.25.(수)	'26.12.01.(화)	'26.12.05.(토)~ '26.12.08.(화) (주말 포함, 4일간)	'26.12.13.(일)~ '26.12.15.(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안산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취득가액 6억 이상 주택만 해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2.0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름)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청 주택과 – 38524호(2026.11.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26,165.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9층 6개동 중 4개동 총 984세대 중 일반분양 984세대**
[특별공급 271세대(기관추천 35세대, 다자녀가구 97세대, 신혼부부 53세대, 노부모부양 27세대, 생애최초 24세대, 신생아 3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1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76	01	084.8861A	84A	84.8861	34.3171	119.2032	58.3779	177.5811	15.5135	180	18	18	27	5	12	18	98	82	4
	02	084.9580B	84B	84.9580	35.6983	120.6563	58.4274	179.0836	15.5266	88	8	8	13	2	6	8	45	43	2
	03	084.8700C	84C	84.8700	36.1221	120.9921	58.3669	179.3589	15.5105	90	9	9	13	2	6	9	48	42	2
	04	099.9001A	99A	99.9001	40.9320	140.8321	68.7034	209.5355	18.2574	180	-	18	-	5	-	-	23	157	4
	05	099.9015B	99B	99.9015	40.4959	140.3974	68.7043	209.1018	18.2576	272	-	27	-	8	-	-	35	237	6
	06	104.8286	104	104.8286	42.6080	147.4366	72.0928	219.5294	19.1581	174	-	17	-	5	-	-	22	152	4
	합 계									984	35	97	53	27	24	35	271	713	22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상품성 개선 및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내 일부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며, 면적 산출근거 등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완료 후에는 현장사무실에 비치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면적 산출시 소수점 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산출하여 소수점에서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8861A	084.9580B	084.8700C	099.9001A	099.9015B	104.8286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99A	99B	10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 · 호	층수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2027.07.14	2028.04.10	2029.01.05	2029.10.15	2030.04.12	2030.10.10	입주지정일
84A	180	101동 1호 102동 6호 103동 5호 104동 1호	3층	2	390,438,400	643,561,600	-	1,034,000,000	51,7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361,900,000
			4층	2	393,836,800	649,163,200	-	1,043,000,000	52,150,000	104,300,000	104,300,000	104,300,000	104,300,000	104,300,000	104,300,000	365,050,000
			5층	4	395,724,800	652,275,200	-	1,048,000,000	52,4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366,800,000
			6-10층	20	400,633,600	660,366,400	-	1,061,000,000	53,05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371,350,000
			11-19층	36	406,675,200	670,324,800	-	1,077,000,000	53,85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376,950,000
			21-29층	36	413,094,400	680,905,600	-	1,094,000,000	54,7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382,900,000
			30-39층	40	414,982,400	684,017,600	-	1,099,000,000	54,95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384,650,000
			40-49층	40	417,248,000	687,752,000	-	1,105,000,000	55,25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386,750,000
84B	88	101동 2호	5층	1	392,704,000	647,296,000	-	1,040,000,000	52,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364,000,000
			6-10층	5	397,235,200	654,764,800	-	1,052,000,000	52,6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368,200,000
			11-19층	9	403,654,400	665,345,600	-	1,069,000,000	53,45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374,150,000
			21-29층	9	409,696,000	675,304,000	-	1,085,000,000	54,25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379,750,000
			30-39층	10	411,584,000	678,416,000	-	1,090,000,000	54,5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381,500,000
			40-49층	10	413,849,600	682,150,400	-	1,096,000,000	54,8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383,600,000
		102동 5호	5층	1	395,724,800	652,275,200	-	1,048,000,000	52,4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366,800,000
			6-10층	5	400,633,600	660,366,400	-	1,061,000,000	53,05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371,350,000
			11-19층	9	406,675,200	670,324,800	-	1,077,000,000	53,85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107,700,000	376,950,000
			21-29층	9	413,094,400	680,905,600	-	1,094,000,000	54,7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382,900,000
			30-39층	10	414,982,400	684,017,600	-	1,099,000,000	54,95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384,650,000
			40-49층	10	417,248,000	687,752,000	-	1,105,000,000	55,25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386,750,000
84C	90	103동 4호 104동 2호	4층	2	391,571,200	645,428,800	-	1,037,000,000	51,85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362,950,000
			5층	2	393,459,200	648,540,800	-	1,042,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364,700,000
			6-10층	10	398,368,000	656,632,000	-	1,055,000,000	52,75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369,250,000
			11-19층	18	404,787,200	667,212,800	-	1,072,000,000	53,6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375,200,000
			21-29층	18	410,828,800	677,171,200	-	1,088,000,000	54,4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380,800,000
			30-39층	20	412,716,800	680,283,200	-	1,093,000,000	54,65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382,550,000
			40-49층	20	414,982,400	684,017,600	-	1,099,000,000	54,95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109,900,000	384,650,000
99A	180	101동 6호 104동 5호	3층	1	424,329,480	696,973,200	69,697,320	1,191,000,000	59,55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416,850,000
			4층	1	426,467,160	700,484,400	70,048,440	1,197,000,000	59,85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418,950,000
			5층	2	428,961,120	704,580,800	70,458,080	1,204,000,000	60,2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421,400,000
			6-10층	10	433,949,040	712,773,600	71,277,360	1,218,000,000	60,9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426,300,000
			11-19층	18	441,074,640	724,477,600	72,447,760	1,238,000,000	61,9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433,300,000
			21-29층	18	448,556,520	736,766,800	73,676,680	1,259,000,000	62,95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440,650,000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	층수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회 2027.07.14	2회 2028.04.10	3회 2029.01.05	4회 2029.10.15	5회 2030.04.12	6회 2030.10.10	입주지정일
			30-39층	20	451,050,480	740,863,200	74,086,320	1,266,000,000	63,3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443,100,000
			40-49층	20	453,188,160	744,374,400	74,437,440	1,272,000,000	63,6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445,200,000
		102동 1호 103동 1호	3층	1	424,329,480	696,973,200	69,697,320	1,191,000,000	59,55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416,850,000
			4층	1	426,467,160	700,484,400	70,048,440	1,197,000,000	59,85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418,950,000
			5층	2	428,961,120	704,580,800	70,458,080	1,204,000,000	60,2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120,400,000	421,400,000
			6-10층	10	433,949,040	712,773,600	71,277,360	1,218,000,000	60,9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426,300,000
			11-19층	18	441,074,640	724,477,600	72,447,760	1,238,000,000	61,9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123,800,000	433,300,000
			21-29층	18	448,556,520	736,766,800	73,676,680	1,259,000,000	62,95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440,650,000
			30-39층	20	451,050,480	740,863,200	74,086,320	1,266,000,000	63,3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443,100,000
			40-49층	20	453,188,160	744,374,400	74,437,440	1,272,000,000	63,6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445,200,000
99B	272	101동 5호 104동 3,4호	3층	2	413,997,360	680,002,400	68,000,240	1,162,000,000	58,1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406,700,000
			4층	2	416,491,320	684,098,800	68,409,880	1,169,000,000	58,45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409,150,000
			5층	3	418,629,000	687,610,000	68,761,000	1,175,000,000	58,75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411,250,000
			6-10층	15	423,973,200	696,388,000	69,638,800	1,190,000,000	59,5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416,500,000
			11-19층	27	430,742,520	707,506,800	70,750,680	1,209,000,000	60,45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423,150,000
			21-29층	27	437,868,120	719,210,800	71,921,080	1,229,000,000	61,45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430,150,000
			30-39층	30	440,362,080	723,307,200	72,330,720	1,236,000,000	61,8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432,600,000
			40-49층	30	442,499,760	726,818,400	72,681,840	1,242,000,000	62,1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434,700,000
		102동 2호 103동 2,3호	3층	2	413,997,360	680,002,400	68,000,240	1,162,000,000	58,1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406,700,000
			4층	2	416,491,320	684,098,800	68,409,880	1,169,000,000	58,45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116,900,000	409,150,000
			5층	3	418,629,000	687,610,000	68,761,000	1,175,000,000	58,75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411,250,000
			6-10층	15	423,973,200	696,388,000	69,638,800	1,190,000,000	59,5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416,500,000
			11-19층	27	430,742,520	707,506,800	70,750,680	1,209,000,000	60,45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423,150,000
			21-29층	27	437,868,120	719,210,800	71,921,080	1,229,000,000	61,45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122,900,000	430,150,000
			30-39층	30	440,362,080	723,307,200	72,330,720	1,236,000,000	61,8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432,600,000
			40-49층	30	442,499,760	726,818,400	72,681,840	1,242,000,000	62,1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434,700,000
104	174	101동 3,4호 102동 3,4호	5층	4	478,127,760	785,338,400	78,533,840	1,342,000,000	67,1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469,700,000
			6-10층	20	483,258,192	793,765,280	79,376,528	1,356,400,000	67,820,000	135,640,000	135,640,000	135,640,000	135,640,000	135,640,000	135,640,000	474,740,000
			11-19층	36	490,027,512	804,884,080	80,488,408	1,375,400,000	68,770,000	137,540,000	137,540,000	137,540,000	137,540,000	137,540,000	137,540,000	481,390,000
			21-29층	36	497,153,112	816,588,080	81,658,808	1,395,400,000	69,770,000	139,540,000	139,540,000	139,540,000	139,540,000	139,540,000	139,540,000	488,390,000
			30-39층	40	499,647,072	820,684,480	82,068,448	1,402,400,000	70,120,000	140,240,000	140,240,000	140,240,000	140,240,000	140,240,000	140,240,000	490,840,000
			40-49층	38	501,784,752	824,195,680	82,419,568	1,408,400,000	70,420,000	140,840,000	140,840,000	140,840,000	140,840,000	140,840,000	140,840,000	492,940,000

■ 공통 유의 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 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 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아파트 84㎡A, 99㎡A, 104㎡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타입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타입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99A	99B	104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4	1	2	-	-	-	7
		서울특별시	1	1	1	-	-	-	3
		인천광역시	1	1	1	-	-	-	3
	국가유공자		4	1	1	-	-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1	-	-	-	4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2	1	1	-	-	-	4
	중소기업 근로자		4	2	2	-	-	-	8
	소계		18	8	9	-	-	-	3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9	4	5	9	14	9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9	4	4	9	13	8	47
	소계		18	8	9	18	27	17	97
신혼부부 특별공급			27	13	13	-	-	-	5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2	2	5	8	5	27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6	6	-	-	-	24
신생아 특별공급			18	8	9	-	-	-	35
합 계			98	45	48	23	35	22	27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able>

구분	내용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7세대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안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단, 우선공급 물량에서 경쟁 발생 시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5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td></tr>
</table>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주택은 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1인 가구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tr><td>2026.11.12.</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table>-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tr><th rowspan="2">소득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6">소득금액</th></tr><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tr><td>우선공급</td><td>130% 이하</td><td>~9,793,892원</td><td>~11,442,863원</td><td>~12,125,081원</td><td>~12,878,142원</td><td>~13,631,203원</td><td>~14,384,265원</td></tr><tr><td>일반공급</td><td>130% 초과
160% 이하</td><td>9,793,893원~
12,054,021원</td><td>11,442,864원~
14,083,523원</td><td>12,125,082원~
14,923,176원</td><td>12,878,143원~
15,850,021원</td><td>13,631,204원~
16,776,866원</td><td>14,384,266원~
17,703,710원</td></tr></table></td></tr>
</table>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8">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able></td></tr>
</table>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

구 분	내 용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026.11.2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번지 ☎ **1833-3367**	• 일시 : **2026.12.0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2026.11.24.(화)** 09:00~17:30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2순위		**2026.11.25.(수)** 09: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
청약연습</td><td colspan="2">-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1.(화) ~ 2026.12.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6.12.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7 서류제출

정당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장 소
정당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12.05.(토) ~ 2026.12.08.(화)**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번지)

■ 정당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자격확인을 위해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번지)**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 유형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동안 보관한 뒤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최초 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1>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견본주택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 신청서	청약자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청약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 생략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분은 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 온라인 발급시 제출처 : 아르뮤제자이 / 발급용 : 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대리인 위임 불가)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O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산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을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O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중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배점기준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자산입증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가점산정 기준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24.06.19. 이후 출생 예정인 태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24.06.19.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의 확인이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O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자산입증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자산입증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분은 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표2>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확인서(신청서,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 불가) ②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 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본인의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 불가) ②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팩스 불가)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 불가)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명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사업자등록증명 및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③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직인 날인)	①, ②, ③ 세무서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 제출 불가자)	①사업자등록증명 ②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세무서/해당 직장 ② 해당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www.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축물/토지 대상)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발급방법 - 서울 (이택스)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 서울 외(위택스) 이용안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 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축물/토지 대상)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이택스, 위택스 ④ 위택스 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토지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www.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축물/토지 대상)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축물/토지 대상)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④ 위택스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부동산소유현황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축물・토지 대상)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 예외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함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각각의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5>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견본주택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분은 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 온라인 발급시 제출처 : 아르뮤제자이 / 발급용 : 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대리인 위임 불가)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O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산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을 명시)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O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직인 날인)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세대원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 입주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위임용) / 제출처(아르뮤제자이)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분은 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2026.12.13.(일) ~ 2026.12.15.(화)** (3일간, 10:00~17: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번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며,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분은 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주택공급 계약용) / 제출처(아르뮤제자이)
	○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부동산 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참조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견본주택 비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 계약 시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제출처(아르뮤제자이)
	○		신분증	본인,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방법	[온라인]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 [오프라인]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기재금액	1천만원 ~ 3천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계약자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사업주체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와 추가 선택품목계약서,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급계약서, 법령에서 전매 가능한 경우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59-71804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59-71804,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이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사업주체 및 관계기관이 인정할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 해야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 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 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분양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하거나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의 반환 등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1)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① **Style UP**

구분			설치내역	공급금액					
				84A	84B	84C	99A	99B	104
인테리어 Style Up	주방 Style Up 선택 시	거실 와이드형 선택 시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거실(후면)+복도 벽면 일부(해당타입)], 시트패널(현관/복도 벽면 일부),거실 우물천장(건축화조명+시트판넬), 실링팬, 거실 전·후면(단천장+리니어조명), 침실 특화 조명+장식장(여닫이도어+선반수납장)(해당타입)	18,480,000	-	-	-	-	-
		거실 와이드형 미선택 시		17,710,000	20,020,000	20,020,000	24,090,000	21,010,000	기본제공
	주방 Style Up 미선택 시	거실 와이드형 선택 시		12,320,000	-	-	-	-	-
		거실 와이드형 미선택 시		11,550,000	10,230,000	10,120,000	12,980,000	11,000,000	-
주방 Style Up (단독 계약 시)			주방특화가구(유럽산 하드웨어),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 조명, 독립형 렌지후드,특화수전,세라믹패널 상판,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주방벽), 루버 천장(해당타입)	6,710,000	9,350,000	9,350,000	11,110,000	9,350,000	기본제공

- 주방 Style Up(유상)과 인테리어 Style Up(유상)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만 세대 내 포인트 컬러가 적용되며, 적용 위치 및 범위는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주방 Style Up[유상], 인테리어 Style Up[유상] 미선택 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시에는, 세대 내 포인트 컬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거실 와이드형(무상)은 84A 타입만 선택 가능하며, 그 외 타입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② **평면 레이아웃**

구분	평면 레이아웃 특화 내역	공급금액
99A	침실 4 특화	880,000
104	베타룸 특화	4,510,000

③ **개별 플러스옵션**

구분	공급금액					
	84A	84B	84C	99A	99B	104
현관 중문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기본제공
침실 붙박이장	1,330,000	1,330,000	1,330,000	1,330,000	1,330,000	1,330,000

구분	공급금액					
	84A	84B	84C	99A	99B	104
욕실 특화 (특화세면대,양변기,수전,브론즈무광, 샤워부스 및 액세서리)	2,530,000	2,530,000	2,530,000	2,200,000	2,200,000	기본제공
특화 수납장 (가전 소물장 및 로봇청소기장)	930,000	930,000	930,000	930,000	930,000	기본제공
인덕션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복합환풍기 (LG 바스에어시스템)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기본제공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설치타입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니 계약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설치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니 계약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시공된 특화수납장 (가전 소물장 및 로봇청소기장)은 유상옵션 품목이며, 주방 Style Up[유상] 선택 시에만 별도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④ 시스템공기청정기 및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_ 기본형

품목	타입	선택안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시스템공기청정기		공급금액	제조사
				대수	설치장소		
시스템공기청정기	84A,B,C	선택 1	-	2대	거실+주방	2,750,000	LG전자
		선택 2	-	3대	거실+주방+침실1	4,100,000	
		선택 3	-	5대	거실+주방+침실1,2,3	6,800,000	
		선택 4	-	6대	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8,150,000	
	99A	선택 1	-	2대	거실+주방	2,750,000	
		선택 2	-	3대	거실+주방+침실1	4,100,000	
		선택 3	-	5대	거실+주방+침실1,2,3	6,800,000	
		선택 4	-	6대	거실+주방+침실1,2,3,4	8,150,000	
	99B, 104	선택 1	-	2대	거실+주방	2,750,000	
		선택 2	-	3대	거실+주방+침실1	4,100,000	
		선택 3	-	5대	거실+주방+침실1,2,3	6,800,000	
		선택 4	-	6대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	8,150,000	
		선택 5	-	7대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알파룸	9,500,000	
시스템공기청정기 + 프리미엄전열교환기	84A,B,C	선택 1	1대	2대	거실+주방	3,850,000	LG전자
		선택 2	1대	3대	거실+주방+침실1	5,200,000	
		선택 3	1대	5대	거실+주방+침실1,2,3	7,900,000	
		선택 4	1대	6대	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9,250,000	
	99A	선택 1	1대	2대	거실+주방	3,850,000	
		선택 2	1대	3대	거실+주방+침실1	5,200,000	
		선택 3	1대	5대	거실+주방+침실1,2,3	7,900,000	
		선택 4	1대	6대	거실+주방+침실1,2,3,4	9,250,000	
	99B, 104	선택 1	1대	2대	거실+주방	3,850,000	
		선택 2	1대	3대	거실+주방+침실1	5,200,000	
		선택 3	1대	5대	거실+주방+침실1,2,3	7,900,000	
		선택 4	1대	6대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	9,250,000	
		선택 5	1대	7대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알파룸	10,600,000	

⑤ 시스템공기청정기 및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_ 거실 확장형

품목	타입	선택안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시스템공기청정기		공급금액	제조사
				대수	설치장소		
시스템공기청정기	84A,B,C	선택 1	-	2대	거실+주방	2,750,000	LG전자
		선택 2	-	3대	거실+주방+침실1	4,100,000	
		선택 3	-	5대	거실+주방+침실1,2,3	6,800,000	
	99B, 104	선택 1	-	2대	거실+주방	2,750,000	
		선택 2	-	3대	거실+주방+침실1	4,100,000	
		선택 3	-	5대	거실+주방+침실1,2,3	6,800,000	
		선택 4	-	6대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	8,150,000	
시스템공기청정기 + 프리미엄전열교환기	84A,B,C	선택 1	1대	2대	거실+주방	3,850,000	LG전자
		선택 2	1대	3대	거실+주방+침실1	5,200,000	
		선택 3	1대	5대	거실+주방+침실1,2,3	7,900,000	
	99B, 104	선택 1	1대	2대	거실+주방	3,850,000	
		선택 2	1대	3대	거실+주방+침실1	5,200,000	
		선택 3	1대	5대	거실+주방+침실1,2,3	7,900,000	
		선택 4	1대	6대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	9,250,000	

추가 선택품목(1)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금액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61-66104	GS건설㈜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납부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31-910061-66104, 예금주 : GS건설㈜)** 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시에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예정임)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계약시 납부일정 부여 예정)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가 선택품목(2)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① 시스템에어컨 _ 기본형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84A,B,C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6,540,000	LG전자	-
	선택 2	거실+주방+침실1,2,3	10,240,000		
	선택 3	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11,820,000		
99A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7,150,000		
	선택 2	거실+주방+침실1,2,3	10,610,000		
	선택 3	거실+주방+침실1,2,3,4	12,190,000		
99B, 104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7,120,000		
	선택 2	거실+주방+침실1,2,3	10,290,000		
	선택 3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	12,170,000		
	선택 4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알파룸	13,750,000		

② 시스템에어컨 _ 거실확장형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84A,B,C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7,120,000	LG전자	-
	선택 2	거실+주방+침실1,2,3	10,290,000		
99B, 104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7,140,000		
	선택 2	거실+주방+침실1,2,3	10,600,000		
	선택 3	거실+주방+침실1,2,3+베타룸	12,18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③ 주방가전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오브제컬렉션 Fit&Max (스테인레스)	M62BAAA332 Z334AAA151	6,690,000	LG전자	-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식기세척기	DIE6PT	1,460,000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④ 열차단필름

타입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84A	3,440,000	후퍼옵틱 (Ceramic 50)	-
84B	2,800,000		
84C	2,820,000		
99A	3,760,000		
99B	3,180,000		
104	3,180,000		

- 열차단필름은 타입별 전체 창호 시공 기준으로, 실내 측 유리1면에 시공됩니다. 단, 발코니가 있는 침실은 발코니창에만 시공되며, 침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분합창)은 제외됩니다.
- 유리창의 크기에 따라 가로방향 이어붙임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고효율 열차단필름 특성상 야간에 점등시 무지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2) 납부계좌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열차단필름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15-33905	우리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계좌는 추가 선택품목(2)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열차단필름) 공사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1)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101동 501호 홍길동→10105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2)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2)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유상 옵션 가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外)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안내사항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와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우리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입니다.
-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는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는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채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을 부담하고, 우리자산신탁㈜는 오로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신탁재산의 목록
2026. 06. 29.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와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후 변경된 계약을 포함하며,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에 의한 신탁재산
[신탁부동산(토지 및 지상건물), 사업비운영계좌, 분양대금수납계좌, 대출금상환적립계좌 등]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시점"에, 우리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우리자산신탁㈜ 명의 분양대금수납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이며, 수분양자는 반드시 우리자산신탁㈜ 명의 분양대금수납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 또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우리자산신탁㈜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와 계약자 간에 또는 시공사 지에스건설㈜과 계약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우리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 촉구 통지를 하는 행위는 우리자산신탁㈜를 대리하여 화이트코리아㈜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나.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다.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등의 채무를 감면하는 행위
 라.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마.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바. 기타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우리자산신탁㈜)를 대리하는 일체의 행위
- 본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안내사항의 내용은, 본 공고문의 어느 내용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설비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31년 0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공급대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

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건축물의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내진능력의 표기 방법 중,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 Ⅰ등급	Ⅶ - 0.203g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라운지, 독서실, 자이웰니스라운지, 프라이빗 다이닝룸,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사운드챔버,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2.7m	지하1 ~ 3층 2.7m / 그 외층 2.3m	2.1m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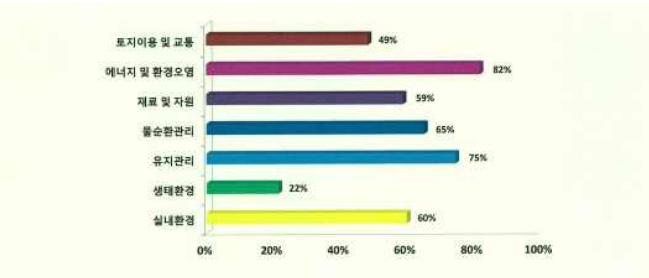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 축 주	신한자산신탁㈜
준공(예정)일	2030년 1월 28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층 수	지하 6층, 지상 49층 / 984세대, 370호
면 적	300,972.4010㎡ (평가면적: 300,972.4010㎡)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설 계 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6-0059-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6.01.19.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수등급(복합건축물(공동주택+일반(주거)+일반(비주거)))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6년 1월 19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조건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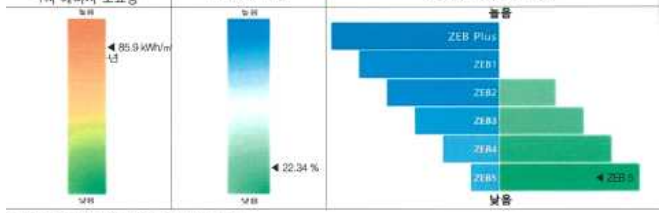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주상복합 신축공사(공동주택, 오피스텔)	인증번호	20260114-1141-1091
준공연도	2030.01.28	평 가 자	노준현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상 49층 / 지하 6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 적	300972.4010 (㎡)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계자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5 등급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 에너지 자립률(%) 합 계	: 22.34 %
		대지 내	: 22.34 %
		대지 외	: 0.00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 년)	: 85.9 kWh/㎡·년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 · 난방 · 급탕 · 조명 · 환기에너지 성능을 점량 평가(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연간 단위면적당1차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에너지 자립률	1차 에너지 총소요량 대비 1차 에너지 순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상세한 인증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으로 결정되어 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 년 01 월 14 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신 청 자: 신한자산신탁㈜
3. 대 지 위 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토 · 성토량(땅깎기 · 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8. 지한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해당없음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인텐즈	★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성종합기술단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산이테크이엔지
감리금액	₩10,879,068,200	₩2,230,672,000	₩2,375,363,000	₩473,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513-81-11531	317-81-24928	337-87-00086	381-88-03035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보증서 번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제 01282026-101-0010000 호	일금 칠천칠백이십사억칠천일백칠십만원정 (₩772,471,7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우리자산신탁(주)	화이트코리아(주)	지에스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1440091	110111-000269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67, 분당수지유타워 A동 210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본 사업의 사업주체(시행위탁자)는「주택법」제54조에 따른 본 사업의 주택공급 주체인 '화이트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 본 사업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및 신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며,「주택공급신탁계약」제 4조, 제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고 본 신탁재산은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합니다.
※ 본 사업의 분양대금계좌는 사업주체(시행위탁자)인 '화이트코리아 주식회사'와 대리사무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체결한「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제 3조에 따라 대리사무신탁사의 명의로 개설되어 관리되며, 대리사무신탁사는「신탁법」제 32조, 제 33조, 제 34조에 따라 대리사무신탁계약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2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6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승인일이 2025년 8월 8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북측에는 6m 보행도로, 서측에는 25m도로, 남측에는 36m도로가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 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반 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 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일부 세대는 단지 특성 상 세대 내 일조 확보율이 불리할 수 있어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배치된 일조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내 공공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 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 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안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산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안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초등학교는 경일초등학교로 배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학생 배치여건 및 통학구역 조정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북부 중학군 내 학생 배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배정 학교는 해당 학년도 안산 교육청 중학교 배정 계획에 따라 결정 되며, 향후 학생배치 여건 및 중학교 학군 조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 방법은 안산시 학군 배정 방법 등 안산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및 비주거 시설(오피스텔, 공공업무시설, 근생시설 등)의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만 가능하며, 개별적인 부피에 따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 형태와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홀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2동의 최상층에는 CLUB CLOUD(스카이라운지, 사운드챔버,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CLUB CLOUD(스카이라운지,사운드챔버, 게스트하우스) 내부 조명 및 외부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실외기 등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104동 서측에는 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옥상에는 인명 구조를 위한 공간이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101~104동 20층과 오피스텔 201~202동 19층은 관계법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입주민의 편의시설 또는 전용공간이 아닌 비상시 피난을 위한 시설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의 관리 및 운영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CLUB XIAN 내 2층 작은도서관의 상부층(3층)에 사우나가 계획되어 있어, 사우나 이용 및 급·배수 설비 작동에 따른 소음·진동이 작은도서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및 주차 대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지면적 및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해당 증감에 따른 별도의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 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와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위치 : 103동, 104동 옥상층 - 중계장치 설치 예정위치 : 지하5층 : 팬룸(102동, 201동) 지하3층 : 팬룸(102동, 201동) 지하1층 : 팬룸(102동, 201동) 지상11층 : EPS/TPS(201동, 202동) 지상12층 : EPS/TPS(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상22층 : EPS/TPS(201동, 202동) 지상25층 : EPS/TPS(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상30층 : EPS/TPS(201동, 202동) 지상35층 : EPS/TPS(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상38층 : EPS/TPS(201동, 202동) 지상45층 : EPS/TPS(101동, 102동, 103동, 104동)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동 전면, 후면 및 103동 후면에 옥외 엘리베이터 위치)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의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아파트 분양면적 이외의 근생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은 계약자의 계약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계 후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 보건, 수질관리,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외부창호 창틀간격,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공공업무시설, 오피스텔, 근생시설 등의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충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인허가 중 소방활동을 위해 축소되거나 설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의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의 외벽에 유리마감재(커튼월룩)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형옥상장식물 등 경관 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발주처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에 의해 항공장애등이 설치되며 높이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연료전지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열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옥상조경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본사업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은 구분되어 있으나,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급됩니다. 입주후 구성된 시설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각각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침, 단지 규약에서 정한 절차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아파트의 입주자, 오피스텔의 소유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입구 스쿨버스존과 근생시설, 주차 진출입구 등으로 인해, 101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소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102동 인근에 통합하여 설치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유지·관리됩니다. • 안산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업무시설은 현재 사용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안산시의 사용 용도 결정에 따라 용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 내 공공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필라테스, 작은도서관, 독서실,사우나, 자이웰니스라운지, 홀, 카페리브로, 다이닝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CLUB XIAN에 설치되는 운동 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 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 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및 지상4층까지의 저층부는 구조검토 및 설계에 따라 구조형식, 기둥, 보, 벽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공간의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쿨버스존 내 보호자 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CLUB CLOUD(스카이라운지) 옥외 공간 일부에 하부 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 배관 및 우수입상관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은 201동·202동 3층에 자이웰니스라운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사우나 등이, 2층에 작은도서관, 골프연습장, CAFE LIBRO가 위치하며, 103동 2층에는 다이닝, 오픈스터디, 독서실이 위치합니다. CLUB XIAN의 주출입구는 아파트 103동 지상 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201동·202동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과는 2층 연결 브릿지를 통해 연결됩니다. CLUB CLOUD는 102동 49층에 위치하며, 사운드챔버,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됩니다. CLUB XIAN 중 골프연습장은 오피스텔에 속한 부대시설이며, 그 외 CLUB XIAN 시설과 CLUB CLOUD는 아파트에 속한 부대시설로, 시설이 위치한 동과 아파트·오피스텔의 부대시설 귀속 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김홍도 미술관 연결통로 및 승강기의 형태, 위치, 접근로 등은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 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무상 제공되며, 3년 이후부터는 유상 전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현장 여건에 따라 미제공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이 적용되는 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콘텐츠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자이웰니스라운지(솔닥), 관리형독서실, 다이닝, 카페, 컨시어지, 공용부 미술품 구독(가나아트), 세대 미술품구독 할인(오픈갤러리), 세대창고 임대할인(다락) 서비스 등은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솔닥'의 원격진료서비스(3년), AI챗봇상담(2년), 자이웰니스라운지 운영(2년)은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며, 이후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가나아트'의 공용부 미술품 구독서비스(2년)로 각 주동 1층 로비(6개동) 및 CLUB XIAN 1개소, CLUB CLOUD 1개소 (총 8점)에 미술품이 설치되며 약정 내용에 따라 서비스 및 혜택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품은 3개월마다 1회 교체설치 되며 별도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됩니다.이후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설치예정인 해외유명작가 설치장식품의 상세 설치위치와 작품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위치 및 내용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전시회, 도슨트 아카데미 등 상세 이벤트 내용은 약정내용에 따라 서비스 및 혜택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대미술품 구독할인서비스(오픈갤러리)는 월 69,000원 상당의 미술품 구독요금(작품크기 12~20호 사이즈, 1년)을 60% 할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주민의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300세대(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한정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약정 내용에 따라 상세 서비스내용과 혜택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락'의 창고서비스는 근린생활시설에 임대되어 운영되는 시설로 업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이 취소될수 있으며, 운영 및 권리는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합니다. 창고 임대는 입주민의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로 약정내용에 따라 상세한 혜택내용과 제공기간은 입점 이후 결정됩니다. • 단지 내 셔틀버스는 최초 운행일부터 1년간 평일(주말·공휴일 제외), 25인승 1대, 운행구간 10km 이내, 시간당 1회·하루 10회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세부 노선·시간은 지원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가 협의하며, 운행 확대 시 추가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요·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축소·중단될 수 있으며, 지원 종료 후 운영 여부와 비용 부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합니다.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2년), 카페&다이닝 운영서비스(1년), 자이웰니스라운지 운영서비스(2년), 컨시어지 운영서비스(1년), 관리형독서실 운영서비스(1년), 피트니스 개인 맞춤형 플랫폼 운영서비스(5년), 공용부 미술품 구독서비스(2년), 세대 미술품 구독할인서비스(1년), 상가 내 창고 임대할인 서비스는 별도 약정된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상기 기간은 각 서비스별 최초 운영개시일로부터의 기간입니다),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이며, 향후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사업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문 위탁관리업체의 협의 과정에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에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최초 3,000권의 도서가 비치되며, 이후 2년간 매월 정가 기준 100만 원 상당의 도서가 추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약정 기간 종료 후 사업주체의 도서 제공은 종료되며, 서비스 지속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서비스 제공사는 제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독서실은 운영에 따라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477대, 오피스텔 483대, 근린생활시설 118대, 공공업무시설 170대, 총 2,248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6층 ~ 지하 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공동주택 급속 16대, 완속 61대, 콘센트형 75대, 오피스텔 급속 14대, 완속 11대, 콘센트형 28대, 근린생활시설 급속 2대, 완속 5대, 콘센트형 6대, 공공업무시설 급속 5대, 완속 4대, 콘센트형 9대 총 236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지하 1층~지하 3층은 2.7m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 4층~지하 6층 주차장의 주행 유효높이는 2.3m입니다 • 지하 3층부터 지하6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 1층 주차장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므로 전 동에서 출입이 불가하며, 지하2층은 102동에서 출입이 불가 합니다. • 아파트와 공공업무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함께 진입하게 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 오피스텔과 근생 주차장 진입구는 공동주택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와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소는 201동하부, 104동 후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 주차장를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 구획 및 진입 램프는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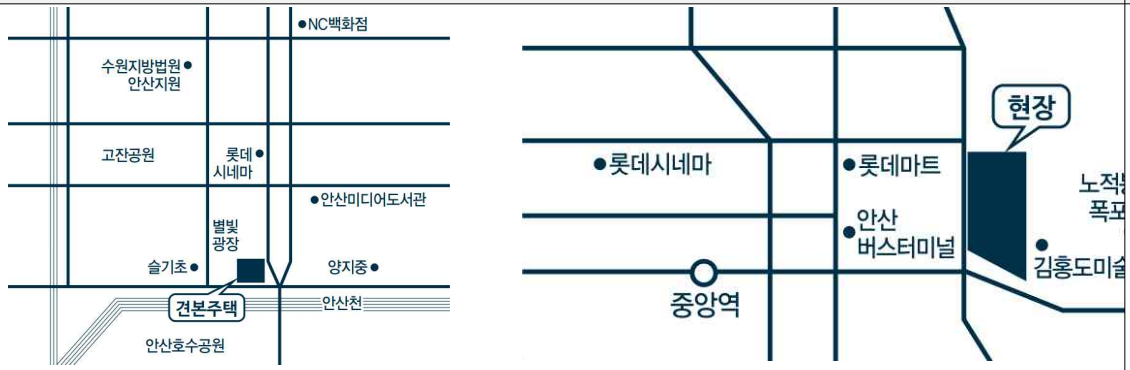
구분		내용
단위 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침실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 침실별 가구(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소음저감을 위한 구조 및 설비는 관계법령,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적용되며, 사용자재, 공법 및 설비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과정 등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에 따라 피난안전층 아래에 있는 세대는 소방차 접안 위치에 따른 방향의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이 세대당 1개소씩 설치되며, 소방관 진입창에 유리난간이 설치 되는 창인 경우에는 고가 사다리차의 사다리 걸침용 난간이 창호하단 적정높이에 설치 됩니다. 난간의 높이는 창호 하단에서 약 20Cm 내외 높이 이며, 소방관련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에 따라 피난안전층 아래에 있는 세대는 소방차 접안 위치에 따른 방향의 창호 유리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침실 또는 거실의 창호 중 소방관 진입창 표시 창호는 외부 조망시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침실1)이 모두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안방(침실1)앞에 발코니가 없으므로,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하향식 피난구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필로티 상부세대 및 최하층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하향식 피난구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창호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하향식 피난구실의 창호는 미서기창으로 설치 되지만, 각 주동의 라인별 최하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완강기를 사용한 피난을 고려하여, 외여닫이창으로 설치 됩니다. • 거실 및 안방 발코니 등의 외부 창호는 유리난간창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 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 시 유리 난간의 파손 우려 및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난간창으로 사다리차 이용은 불가합니다. •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 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및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패널 및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배관 및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사 시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재료분리대, 몰딩 등이 추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104㎡ 제외) 현관중문은 타입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침실4 옵션(99A), 베타룸 옵션(99B, 104)에 포함된 슬라이딩 도어는 타입별 사양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 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 유·무상 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오토씰은 침실1(안방)과 다용도실 도어 하부에만 설치 됩니다. • 특화수납장(가전 소물장 및 로봇청소기장)은 유상옵션 품목이며, 주택형별 사이즈가 상이합니다. 열 및 증기가 발생되는 가전제품 사용시 반드시 도어를 오픈해야 하며, 내부 공간 및 사이즈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에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픽쳐레일은 세대당 1개소 기본제공되며, Style Up 선택 시 위치와 길이는 변경됩니다. (타입별 픽쳐레일의 위치와 길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내 시스템선반의 일부 구간은 스타일러 설치를 위한 공간이 있으며 해당 공간의 선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아트월을 포함한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마감재 관련으로 나누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일류는 생산 시기에 따라 색상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세면대 가구장 가림막 위치 및 형태는 설비배관의 간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타일은 대형 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등)가 있을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 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한 옵션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 세대 내 우물천정의 크기 및 적용범위가 상이 할 수 있으며, 이질재 구간에는 별도 재료분리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는 기본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LG전자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3층 또는 4층 또는 5층)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 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자이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전기 쿡탑 적용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주방 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 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형 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 제약과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최하층 세대는 화재 등 유사 시에 하향식피난구실의 완강기를 사용하여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 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 옵션 선택 시, 현관 신발장 상부 수납함 내부에 SMPS함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듭니다. • 기준층과 PD 위치가 다른 경우 하부층 세대 천장 내부에 위생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CLUB CLOUD(스카이 커뮤니티)에는 하부 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시경 점검으로 인해 묶음 배관은 불가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가동은 시스템 공기청정기 옵션 선택 시 시스템 공기청정기 장비 본체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기본 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 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 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 됩니다. • 엘리베이터 전실 PS(파이프 샤프트) 내부에 세대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기 하부에 온냉수 공급을 위한 분배기 박스가 설치됩니다. • 부부욕실 유상옵션 특화 샤워수전 선택 시 3기능(핸드샤워, 폭포샤워, 레인샤워) 중 2기능 이상 동시 사용 할 경우 수압 및 유량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 1기능 사용을 권장합니다. • 104타입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주방용 시스템에어컨은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프리미엄 환기 옵션 선택 시 통합제어가 아닌 별도 전용 리모컨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장된 센서로 운전되고, 기본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 됩니다. • LG전자 프리미엄 환기 옵션 선택 시 주방 환기와 연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 센서 부착으로 인해 월패드와 유선리모컨에 표기된 센서와는 수치가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주변 공배관을 냉장고, 로봇청소기 급배수용으로 활용할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배관 연결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 등은 당사에서 보증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공기청정기,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기타 안내 사항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시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견본주택 안내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비고
	■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번지 ■ 현 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번지 ■ 홈페이지 : http://xi.co.kr/armusee ■ 분양문의 : 1833-336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